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0,075,509	16,502,265
일반회계	531,690,099	15,950,703
특별회계	18,385,410	551,562
기타특별회계	18,385,410	551,562
상수도	11,378,639	341,359
의료급여기금	1,979,075	59,372
기초생활보장기금	2,282,416	68,472
주민소득지원기금	1,289,634	38,689
주택사업	274,200	8,226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250,442	7,513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16,449	15,493
공유임야관리	389,959	11,699
묘포장	24,596	7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41,51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